

김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4년 12월 7일 김포시장
나. 회부일자 : 2004년 12월 10일
다. 상정일자 : 2004년 12월 13일
라. 의결일자 : 2004년 12월 14일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내 기업체의 연구활동 강화를 위하여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 최근 정부정책상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는 추세에 있어 상위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관리지역내 일부 행위가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가. 관리지역내 공동주택중 기숙사를 건축 가능하도록 허용(안 별표 23)
- 나. 관리지역내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건축가능한 연구소에 대한 단서조항 삭제(안 별표 23)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본 안건은 상위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관내 기업체의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단서

조항을 삭제함으로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규제완화의 차원에서 개정하는 사항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다만, 제51회 임시회에서 이영우의원외 2인이 “ 국제인증기관의 공신력 확대와 연구분위기 조성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내 기업의 기술혁신 등에 도움이 되도록 ” 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원발의 하였을 때 집행기관에서 별표 23의 바목에 일반 기업체의 연구소 설치목적으로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국가 또는 지방자 치단체가 설치·운영하거나 공인한 경우에만 연구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단서 규정의 첨가를 주장하여 수정된 사항으로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어보실 필요가 있겠음.

4. 질의·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